

개 인 정 보 보 호 규 정

제 정 : 2012.12.27

1차 개정 : 2015.03.1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 라고 함) 고객 및 내부직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비인가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오·남용, 훼손, 변조, 유출 등의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자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사를 말한다.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6. “분야별 개인정보책임자”(이하 분야별 책임자)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란 개인정보보호를 공사 전체에 걸쳐 동등한 수준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안의 조정·심의 및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8.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보호계획 및 방침 운영, 교육, 침해대응, 개인정보 실태조사·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실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9.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10.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사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계약관계에 의하여 회사의 자산에 접근하는 모든 제3자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모든 임직원은 공사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제5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관련 규정) 이 규정의 적용을 위해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7조(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를 공사 전체에 걸쳐 동등한 수준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안의 조정·심의 및 의사결정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담당본부장,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장, 총무 담당부서장, 신용정보 담당부서장, 국내채권관리 담당부서장, 법무 담당부서장, 고객지원 담당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필요시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의장은 개인정보보호 담당본부장이 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 관련 업무는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에서 담당한다.

제9조(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관련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정책 위반시 처벌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심의 방법) 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추진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예비심의 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추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실무위원장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장
2. 실무위원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장이 지명하는 각 부서 및 지사 직원

③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소집하고, 예비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심의결과 처리)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 14 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담당본부장이 된다.

제 15 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등)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제·개정
2.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3.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및 개선
4.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의 규정 및 총괄관리
5.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6.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7.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9.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된다.

부 칙 (제정)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5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